

#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7일

경 기 도 지 사

## I. 공고개요

- 공고기간 : 2023.3.27.(월) ~ 2023.4.15.(토)
- 공고장소 : 경기도 및 시·군 홈페이지, 관련 협회 등

## II. 모집기준

- 모집목적
  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
- 등록자격 및 등록제외 사유
  - (등록자격) 공고일 전날(2023.3.26.)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·등록을하고 있는 자(업체)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

-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. 또는 같은 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를 한 자.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자.

※ 신규 등록을 원하는 감리자만 신청 (기존 명부에 포함된 감리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)

- (등록제외 사유)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('23.3.27.)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
2.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('22.3.27.~'23.3.26.) 업무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### III. 등록신청

- 신청기간 : 2023.4.17.(월) ~ 2023.4.21.(금) 18:00 (5일간)
- 신청방법 : [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]에 온라인 신청  
※ <https://blcm.go.kr/cmm/main/mainPage.do> (회원가입) 해체공사감리자
- 첨부서류 ※ 첨부서류는 신청 전 1개월 이내('23.3.17.~)에 발행·작성된 것
  - 사업자등록증
  - 개설신고확인증 (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)
  - 행정처분 조회서 (조회기간 : '22.3.27. ~ '23.3.26.)
  - 교육 수료증 (교육 미이수자는 등재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가능)
  - 재직증명서 및 자격 확인서류 (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)

### IV. 기타 안내사항

-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제출서류 미비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해체공사감리등록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등록 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해야 합니다. ※ 경기도 26개 권역

구분	권역	구분	권역	구분	권역
1	수원시	10	평택시	19	양주시
2	고양시	11	의정부시	20	안성시
3	용인시	12	파주시	21	포천시
4	성남시	13	시흥시	22	여주시
5	부천시	14	김포시	23	양평군
6	안산시	15	광명시	24	동두천시
7	화성·오산시	16	광주시	25	가평군
8	남양주·구리시	17	이천시	26	연천군
9	안양·군포·의왕·과천시	18	하남시		

-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보완내용이 통보되며,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시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상 반려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.
-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만이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.
  - ※ 다만, 교육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미이수자는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나 교육 이수 완료 증빙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
- 해체공사감리자는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2조 및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- 모집공고 관련 ‘자주 묻는 질문’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- 경기건축포털 : ggarchimap.gg.go.kr [건축안전 > 자료실(건축안전)]
- 문의처 :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 (☎031-8008-3236)

< 붙 임 >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(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) 1부. 끝.

취소    등록

▶ 신청내용

사업자구분 *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법인 <input type="radio"/> 개인		
세율제ID *	<input type="text"/>		
성명 *	<input type="text"/>	사무소명 *	<input type="text"/>
생년월일 *	내국인 <input type="text"/> 예시) 19800101	전화번호 *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
사업자번호 *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사업자등록증 * ?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선택"/> 선택한 파일 없음
사무소주소 *	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자상"/>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	
SMS 수신 동의 *	<input type="radio"/> 동의함 <input type="radio"/> 동의하지 않음	휴대폰번호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
팩스번호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	

▶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

신고번호 * ?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	
개설신고확인증 ?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선택"/> 선택한 파일 없음		
자격번호 *	제 <input type="text"/> 호	행정처분조회서 ?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선택"/> 선택한 파일 없음

▶ 해체공사감리자(원) 교육 수료증

+ 추가    - 삭제

<input type="checkbox"/>	교육이수번호	해체공사감리자(원) 교육 수료증 ?
<input type="checkbox"/>	제 <input type="text"/> 호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선택"/> 선택한 파일 없음

▶ 해체공사감리자 권역 지정

선택	권역명	지역(시군구)
<input type="radio"/>	부천시	부천시
<input type="radio"/>	파주시	파주시
<input type="radio"/>	안양·군포·의왕·과천시	과천시, 군포시, 안양시 동안구, 안양시 만안구, 의왕시
<input type="radio"/>	양양군	양양군
<input type="radio"/>	수원시	수원시 권선구, 수원시 영통구, 수원시 장안구, 수원시 팔달구
<input type="radio"/>	광명시	광명시
<input type="radio"/>	화성·오산시	오산시, 화성시

##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방법 안내

- ※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명부 등재 제외되거나 등재 이후라도 등재취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.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전 1개월이내 발행(재발행)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합니다. (사업자등록증, 개설신고확인증 제외)

- 1. 사무소명:** 관할 기관장이 발급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상 사무소 (상호,법인)명 기재
- 2. 사업자등록번호:**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- 3. 사무소 주소:**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
- 4. 휴대폰번호:** 근무시간(평일 09~18시)중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
- 5. 신고번호 :**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번호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  
<예시>수원시-건축사사무소-00호, 경기-1-2-345호
- 6. 개설신고확인증:**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(건설기술용역업) 등록증
- 7. 자격번호:** 건축사 자격번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
- 8. 행정처분조화서:**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(조회기간: `22.3.27. ~ `23.3.26.)
- 9. 교육수료증:**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 수료증  
※ 교육 미이수한 경우 교육이수번호 기재란에 "이수 예정"으로 작성하고, 감리업무 실시전까지 이수하여야 함
- 10. 권역지정:** 사무소 등록 소재지 1개 권역만 선택 가능